

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
사회정책 지원 조례안
(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47호
- 나. 제 출 자 : 고영찬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5. 28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5. 28.

2. 제안이유

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범 예방과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지원사업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및 제5조)
- 라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마. 비밀준수의 의무 및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및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, 94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4. 5. 29. ~ 2024. 6. 5.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들을 마련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의원 발의 되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1)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-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본 조례상의 지원 대상을 보호관찰 대상자, 사회봉사·수강명령 대상자, 갱생보호 대상자로 규정함

2) 지원사업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및 제5조)

-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상담 심리치료, 직업훈련, 가정 회복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

3)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-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, 정신보건시설,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

다. 검토의견

-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출소자를 대상으로 숙식제공, 주거지원, 직업훈련, 창업지원, 취업지원 등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, 재범률이 2020년에는 0.6%, 2021년 0.8%, 2022년은 1.1%로 나타났음. 이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사회복귀와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재범률, 재복역률을 낮출 수 있다는 근거를 보여주는 자료로 사료됨.

○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호를 받은 출소자의 재범률

(단위 : 명, %)

사업별 구분	계	숙식제공	주거지원	직업훈련	창업지원	취업지원	
2020	종료자	7,496	1,077	251	3,232	5	2,931
	재범	45	13	5	1	0	26
	재범률	0.6	1.2	2.0	0.0	0.0	0.9
2021	종료자	7,788	1,141	273	3,268	2	3,104
	재범	63	18	3	1	0	41
	재범률	0.8	1.6	1.1	0.0	0.0	1.3
2022	종료자	7,953	984	211	3,255	5	3,498
	재범	56	18	2	2	0	34
	재범률	1.1	1.8	0.9	0.1	0.0	1.0

○ 금천구 출소자 관련 수혜인원

연도/사업	숙식 제공	원호 지원	직업 훈련	취업 알선	주거 지원	기타 지원	계
2021년도	3	20	6	35	12	31	107
2022년도	2	28	8	34	12	30	114
2023년도	3	28	3	30	12	52	128

출처: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

- 보호 선도 지원사업은 사회적 외면과 낙인, 고립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정을 유지함으로써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며 범죄율 하락으로 인한 안전한 공동체 형성,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.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2. 1. 21.] [법률 제18299호, 2021. 7. 20., 일부개정]

제2조(국민의 협력 등)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.

③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7. 20.>

[전문개정 2009. 5. 28.]

제3조(대상자)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(이하 “보호관찰 대상자”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형법」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
2. 「형법」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
3. 「형법」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

4. 「소년법」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

5.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

②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하여야 할 사람(이하 “사회봉사·수감명령 대상자”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형법」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

2. 「소년법」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감명령을 받은 사람

3.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

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(이하 “갱생보호 대상자”라 한다)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, 주거 지원, 창업 지원,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4.

5. 20.>

[전문개정 2009. 5. 28.]

제94조(보조금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9. 5. 28.]